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9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시**	시** 1980-01-01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4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74-01-07	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25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76-04-06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5번길	무단전출
정**	정** 1967-08-22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	무단전출
강**	강** 1979-04-27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강**	강** 2002-07-18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강**	강** 2006-01-05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68-07-08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68-10-03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원**	원** 1979-03-07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81-03-12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손**	손** 1982-04-04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 진 형 문의전화 : 032-560-3365)

2014년 09월 11일

검단4동장

